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 미 시
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 구미시 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·보완하여 구미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나. 상위법에 따라 용어 변경(안 제1조～제20조)

1) (당초) 지역정보화 → (변경) 정보화

2) (당초) 시행계획 → (변경) 실행계획

다.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기 삭제 및 상위계획 변경(안 제4조)

라. 정보화책임관 변경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전자정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”를 “구미시 정보화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”를 “구미시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지능정보화”란 정보의 생산·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·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·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”을 “(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”를 “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”을 “(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정보화의”를 “정보화의”로, “5년마다 구미시 지역정보화”를 “구미시 정보화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고”를 “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, 제2호 및 제10호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각각 “정보화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”을 “(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정보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”을 “정보화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행계획”을 “실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한다.

제6항 본문 중 “하고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시행계획”을 “실행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지역정보화 시책”을 “정보화 시책”으로, “지역정보화 사업”을 “정보화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국장이”를 “장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시행계획”을 “실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지역정보화의 추진”을 “정보화의 추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각각 “정보화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각각 “정보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역정보화 추진”을 “정보화 추진”으로, “지역정보화와”를 “정보화와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	구미시 정보화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구미시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----------. 제2조(정의) 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지역정보화”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·주민생활·산업·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·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. 5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지능정보화”란 정보의 생산·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·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·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	제3조(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---------- 정보화----------

여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	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,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-- 정보화의 ---------- 구미시 정보화 ----------.
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고 시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구미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	② --------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----------.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③ ----------.
1.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	1. 정보화 ----------
2.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	2. 정보화----------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10. ----- 정보화----------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미시 지역정보	제5조(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----- 정보화 실

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----------.
② 시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실행계획----------.
제6조(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)	제6조(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)
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보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① 정보화 -----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⑥ ---------- 한다. ----------.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	제7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·점검	2. --------- 실행계획----------
3.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	3. ------ 정보화----------

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----------
제9조(정보화책임관)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할 수 있다.	제9조(정보화책임관) ① ------ 정보화 시책---------- -------- 정보화 사업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실국장이 된다.	② ---------- -- 장이 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	④ ---------- 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	2. ---------- ---------- 실행계획---- --------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	제3장 정보화의 추진
제10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(생 략)	제10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.	② ---- 정보화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

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③ ----- 정보화 ----------.
제11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1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---- 정보화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의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	3. ------ 정보화 ----------
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정보화 추진---------- 정보화와 ----------.
제2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21조(준용) ---------- 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

관계법령

□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제2조(용어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~4. 생략

5. “지능정보화”란 정보의 생산·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·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·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「전자정부법」

제5조의2(기관별 계획 수립 및 점검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관별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정보통신과
입 안 자	과 장	이 운 균
	팀 장	김 경 미
	담 당 자	박 소 연 (480-6655)